보도자료

2013. 3. 13.

담당부서 : 사법정책실

담 당 자 : 김상윤 심의관

공보관실 : ☎ 3480-1255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을 실시한다고 밝혀-

- 양승태 대법원장은 3. 13.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마련한 대법원장 초청 토론에서, 법원 사상 최초로 공개변론 사건에 대한 중계방송을 실시한다고 밝 혔음(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변론**에 대해 중계방송을 실 시하는 것은 최초임)
- 대법원은 2013. 3. 21.(목) 14:1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u>공</u> 개변론을 열고 사상 최초로 중계방송을 실시하기로 함
-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함으로써 재판 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 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① 추진 배경

- 1.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전원합의체 <u>공개변론의 중계방송은 법원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대</u> 법원 재판을 방송에 의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u>국민의 사법부에 대한</u>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공개법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변론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질서가

형성되고 정의가 실현되는지 국민들에게 법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함

2.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하여 국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있을 때 <u>분열을 완화시키고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대법**</u> 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 함

② 기대 효과

1. 가치 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론의 장 마련

-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의 심리를 방송을 통해 공개 함으로써 <u>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u>를 제공함
- 2. 국민의 참여에 의한 사회 갈등의 조율과 통합
- 대법원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대립되는 의견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u>사법</u>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 궁극적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u>사</u> 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함

③ 공개변론 사건의 주요 내용

1. 재판 개요

○ 사건 : 대법원 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등

○ 피고인 : 베트남 국적의 여성(1987년생)

○ 피해 아동 : 자녀(2007년생)

○ 검사 : 이건리 대검찰청 검사(공판송무부장)

○ 변호인 : 김용직 변호사(12기), 한연규 변호사(35기), 양은경 변호사(여, 39기)

○ 검찰측 참고인 : 곽민희 교수(숙명여대 법대)

○ 변호인측 참고인 :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2. 사건의 내용

O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u>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u> 양육 중인 자녀(생후 13개월)를 데리고 출국하여 베트남 친정에 자녀를 맡긴 행위에 대하여 국외이송약취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임

O 소송 경과

- ① 제1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고합24) : 2010. 7. 28. 국외이송약취 등 에 대해 무죄 선고
- ②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0노363): 2010. 10. 8. 항소기각(무죄) [판결 요지] 피고인이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비록 다른 보호감독자인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O 사건의 쟁점

어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행위를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 자녀(12세 딸)를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아버지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로,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

3.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

O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의 경우

-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작년 전체 결혼의 9%)과 다문화 가정(총 57만명, 전체 국민의 1%)의 비중이 큰 만큼 외국인과의 이혼(작년 전체 이혼의 10%)도 많이 발생함
- <u>다문화 가정의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일</u> <u>방적으로 한국 국적의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 버리는 일이 계속 생기</u> 고 있음
- 이 사건은 이런 행위가 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선례가 됨

O 국내 이혼의 경우

- 국내 이혼의 경우 자녀를 선점하여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먼저 자녀를 데리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이 사건은 <u>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u> 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만일 유죄가 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부모 중 일방이 상 대방과의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보호하는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방송 송출 관련

○ 일정

- 2013. 3. 21.(목) 14:10부터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 예상 ❖ 20분 지연방송 실시 예정이므로 실제 방송시간은 14:30으로 예상(다만 추후 방송사에서 중계방송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간 중계로 변경될 수 있음)
- 중계방송
 - 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 동시 중계 예정
 - 20분 지연방송 실시

- 중계방송 관련 개인정보보호조치
 - 사건 관련자에 대한 비실명처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지연방송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필터링 조치

5.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 개정 이유
 -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변론을 홈페이지, 인터넷 등 방송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지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대법원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 의 근거조항을 신설한 바 있음

○ 주요 내용

-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원하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신설(제7조의2 제1항 신설)
-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등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7조의2 제2항 신설)
- 아울러 방송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장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7조의2 제3항 신설)